

전주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3가단440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박주원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운

변 론 종 결 2024. 11. 7.

판 결 선 고 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4. 5.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2. 4. 19. 접수 제844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법원 2018차606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 전주지방법원은 2018. 3. 15.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, “C은 원고에게 4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3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. 위 지급명령은 2018. 5. 4. 확정되었다(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‘이 사건 대여금채권’이라 한다).나.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다가 1982. 3. 25. 사망하였고, D의 상속인들은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하여 2021. 3. 12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‘1982. 3. 25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다. C은 2021. 3. 19.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3. 12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(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2980호)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,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2. 3. 14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.라. 원고는 2022. 4. 19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4. 5.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C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한 것은,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

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

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C은 무자력이 아니었다.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은, C의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9,945,063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7,700,000원의 합계 47,645,063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위 대물변제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.

3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

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채무자의 무자력

1) C은 2022. 4. 5. 대물변제 당시, 가) 적극재산으로 ① 전주시 완산구 E 대 191.70㎡, 위 지상 주택 목조세멘와즘 평가건 주택 건평 46.20㎡ 및 위 지상 제2호 세멘브록조스라브즘평가건 주택(이하 ‘이 사건 제1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대한 1/2지분의 소유권,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, 나) 소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C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는 F조합에서 청구금액 35,621,706원으로 하여 2020. 6. 10. 접수 제63085호로 가압류 채무, ② G조합에서 2014. 3. 5. 접수 제28415호로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무, ③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전주시의 압류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이 있다.

2)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(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3다36478, 36485 판결 참조),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면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과세표준액 49,079,999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약 9,5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할 것인바,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

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다. 사해행위와 사해의사

- 1)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,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).
- 2) 이 사건의 경우,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, C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① 피고가 2022. 4. 5.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C의 채무 19,945,06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, ② 피고가 2022. 6.경부터 2023. 4. 27.까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C과 피고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2,77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실,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합계 금액은 21,689,000원으로서 피고가 C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보다 미달할 여지도 커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.

그런데,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점,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3. 12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, C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등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관용

별지